

# 근로자이사후보 선거관리 내규

제정 2017. 8.16 내규 제359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및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에 의거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근로자이사후보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에 있어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관리 사무를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위촉)**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이사후보 선거에 입·후보 하지 않은 근로자 중에서 사용자측 대표 3명과 근로자측 대표 3명으로 구성하며, 근로자측 대표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과반이상인 노동조합이 근로자측 대표 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입후보자 등록, 자격심사, 사퇴수리 및 기호추첨
2. 선거인명부 작성
3. 전자투표 운영방법 또는 투·개표소 설치 및 관리
4. 선거운동 방법의 결정 및 통제와 승인
5. 선거에 관련된 모든 공고 및 안내문 부착
6. 근로자이사후보 득표순위 확정 및 선거록 작성
7. 선거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내규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 실시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시달과 선거 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 관리운영)** 공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무에 대한 협조 요구가 있을 때는 공단은 우선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소집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의 등록 마감시간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공고하여야 하며 입후보자의 등록 마감 후 10일 이내에 선거하여야 한다.

### 제3장 입후보등록

**제8조(입후보자의 등록 및 선거)** ① 공단의 근로자이사에 입후보하려는 근로자는 필히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후보 등록 신청서와 근로자 정원의 5% 이상, 200인 이상 중 적은 숫자 이상의 근로자의 추천을 받은 제2호 서식의 후보자 추천서 등을 첨부하여 다음 각 항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 ② 후보자가 본 내규를 위반하여 등록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 ③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후보자에게 통보하고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선거의 시기)** 근로자이사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실시한다.

**제10조(입후보자의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등록 신청서를 심사하여 정관 및 임원추천위원회운영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후보 등록을 확정한다. 단,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결함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확정되면 이를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의 기호부여는 접수 마감 후 추첨에 의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를 하였을 때 또는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선거운동

**제11조(선거운동 및 선거유인물)** ①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유인물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경력, 정견 등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되 그 수량, 종류와 크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며 벽보의 경우는 가로 40cm × 세로 60cm 이내로 한다.

- ② 후보자의 유인물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제작된 유인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검인)를 받은 후 배포한다.
- ③ 후보자는 사내 인트라넷으로 동영상 파일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정견발표를 3회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검인)를 받아야 된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허용하되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고 허위사실 유포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은 금지한다.

**제12조(선거 운동 기간)** ①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투표 전일 24시까지로 한다.

- ②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후보 추천 서명 등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금지사항)** 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1.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행위.
-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4. 각종 선거 관련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
- 5. 기타 규약 및 규정에 위배되는 일체 행위.

- 6.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유인물을 홈페이지 및 사내 인트라넷으로의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 게재 및 유포행위.
  - 7. 사퇴자가 공개적인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표명하는 행위
  - 8. 기타 위배되는 유인물을 사용하는 행위
- ② 제1항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통상관례 등에 따른다.

**제14조(금지사항 위반자의 조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3조의 위반 사실이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식사과명령, 입·후보 무효결의 및 순위 무효처분을 할 수 있고 중대한 사항의 위반에 대하여는 인사담당부서 또는 감사담당부서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장 선거인명부

**제15조(선거권자)** 공단에 속한 근로자는 근로자이사 후보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제16조(피선거권자)** ① 근로자이사 후보는 공단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이사후보가 될 수 없다. 임명시 또는 임명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3. 단체협약 제5조 제1항에 의거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직원
4. 선거 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 당일부터 선거 공고일까지 직위자(현장소장 이상) 신분에 있는 직원

**제17조(선거인 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열람)** 선거인명부 열람은 투표 전일까지 하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19조(명부 수정)**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실을 지적한 직원이 있을 시는 증빙에 의하여 수정, 추가하고 선거관리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제6장 투표와 개표

**제20조(근로자이사 후보의 순위결정)** ① 근로자이사 후보 선거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다.

- ② 근로자이사 후보 순위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근로자이사후보 순위를 결정한다.

**제21조(투표방법)** ① 선거는 전자투표 또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②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근로자 1명 당 1표로 한다.

**제22조(투표장소, 시간)** ① 근로자이사후보 투표는 전자 또는 종이투표로 한다. 단, 전자투표 미실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투표는 해당일 오전 8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6시에 마감하며, 투표마감일은 정오 12시까지 마감하고 개표한다.

**제23조(투표용지 및 투표함)** ① 투표용지 교부 시는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에 의거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수령 받아야 한다. 단, 선거권자가 투표용지를 수령 후 투표소를 이탈하였을 시는 무효로 한다.

② 투표용지,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 및 직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 및 투표함은 해당 투표소의 선거인 명부와 함께 투표 개시 전까지 투표소에 배부하여야 한다.

④ 투표 종료 시에는 투표함을 선거관리위원이 서명 날인한 뒤 봉인하여야 한다.

**제24조(부재자 투표)** 부재자 투표일시,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고한다.

**제25조(참관인)** 참관인은 입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1명에 한하여 투표 및 개표사항을 참관 할 수 있으나 1개 이상의 투표소를 운영하는 경우 입후보자는 투표소별 1명의 참관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단, 방청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방청할 수 있다.

**제26조(투표·개표사무)** ① 투표·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투표·개표사무에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투표관리관을 지명하여 투표·개표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위원장이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선거록을 작성한다.

**제27조(개표)** ① 투표가 완료된 후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선언으로 투표함을 즉시 일괄 개표하며 개표완료 즉시 선거결과를 확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맞춰 공고하여야 한다.

② 투표함을 개표할 때에는 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투표관리관들이 진행한다.

**제28조(이의 신청의 처리)** ① 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등이 선거 효력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즉시 결정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 종료 후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관계 증빙서류를 검토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부정선거 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보고 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할 수 있다.

1. 선거 무효
2. 순위 무효
3. 경고 처분

## 제7장 재선거

**제30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관위는 즉시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후보자가 없을 때
  2. 근로자이사 후보로 결정된 자가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후보자등록 당시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를 포함)
  3.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무효 또는 순위무효를 결정한 때
  4. 제20조(근로자이사 후보의 순위결정)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이사 후보 순위 결정이 불가할 때
  5. 선거인명부상 선거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 ③ 제1항 제3호의 선거무효는 투표지가 들어 있는 투표함의 분실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하고, 순위무효는 후보자가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그러한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순위가 서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8장 보칙

**제31조(세부운영사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내규외의 사항)**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3조(징계)** 선거관리위원 및 기타 선거 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태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로 징계 위원회에 회부한다.

## 부 칙(2017.8.1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선거권자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최초 근로자이사후보 선거 시에는 제1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근로자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제1회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개최일을 기준으로 해당 일에 직위자(현장소장 이상) 신분에 있는 직원의 경우 근로자이사 후보가 될 수 없다.

【별지 제1호】

(서울시설공단) 근로자이사후보 선거 <b>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b>			사진 3×4cm
성 명	김 청 령(金靑廉)	사원번호	
주 소	서울시 〇〇구 〇〇길 〇〇 대한아파트 101-501		
생년월일	1960 년 1 월 1 일(만50세)	입사일자	2000년 〇〇월 〇〇일
소속부서	〇〇부서	직 급	〇급
근 무 이 력	년 월 일	근 무 내 역	
	2005. 2. 1. ~ 2008. 4. 30.	〇〇부서 선임	
	2008. 5. 1. ~ 2011. 4. 30.	〇〇부서 과장	
위와 같이 서울시설공단 근로자이사후보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〇 월 〇 일 입후보자 : 김 청 령 (인)  서울시설공단 근로자이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후보자 추천서(별첨 양식) 1부 3. 직무수행계획서(서울시설공단 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1부		

주 : 허위경력, 허위학력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울시설공단) 근로자이사후보 선거  
후 보 자 추 천 서

근로자이사후보 : 소속 ○○부서 성명 김 ○ ○

상기인을 서울시설공단 근로자이사후보로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 월 ○ 일

(서울시설공단) 근로자이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연 번	소속부서	사원번호	성 명	서 명
1	○○부서	1200XXXX	홍길동	홍길동
2	○○부서	1200XXXX	전우치	전우치
3	○○부서	1200XXXX	홍경래	홍경래
4	○○부서	1200XXXX	장길산	장길산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o. 1

## 후보자 등록 접수증(원 부)

주 소 : 서울시 〇〇구 〇〇길 〇〇

성 명 : 김 청 렬

사 원 번 호 : 6001이

등 록 일 시 : 20 년 〇 월 〇 일 10 시 〇〇 분

위와 같이 서울시설공단 근로자이사후보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음.

20 년 〇 월 〇 일

(서울시설공단) 근로자이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간 인)

.....  
절 취 선

.....  
절 취 선

No. 1

## 후보자 등록 접수증(교부용)

주 소 : 서울시 〇〇구 〇〇길 〇〇

성 명 : 김 청 렬

사 원 번 호 : 6001이

등 록 일 시 : 20 년 〇 월 〇 일 10 시 〇〇 분

위와 같이 〇〇기관 근로자이사 후보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음.

20 년 〇 월 〇 일

(서울시설공단) 근로자이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별지 제4호】

## 근로자이사후보 선거결과 공고

20  년  ○○월  ○○일  실시한  서울시설공단  근로자이사후보  선거결과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20  년  ○  월  ○  일

(서울시설공단)  근로자이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득표순위	득표수	기  호	성  명
			김  청  협